

제1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2013. 04. 25 (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건명	비고
1474	(1)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91	(2) 충주시 시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492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493	(4)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2.06	2013.02.07	2013.04.16	2013.04.16	보건위생과장
(2)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2013.04.09	2013.04.09	2013.04.16	2013.04.16	이재문의원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2013.04.09	2013.04.09	2013.04.16	2013.04.16	기획감사과장
(4)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04.09	2013.04.09	2013.04.16	2013.04.16	종합민원실장

2. 제안설명요지

(1)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실성이 없어 불합리한 일부 조항 등을 정비하여 충주시 노인 전문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조)
- 나. 수탁자의 자격 중 불합리한 일부조항 삭제와 보완(안 제5조)
 - 일부내용(노인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고 충주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자) 삭제
 - 지역제한 완화(충청북도로 주소를 제한한 사항 삭제)
 - 수탁자의 요건 일부 강화
 - 의료법인 : 대표자가 3년 이상 의료기관 운영했을 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계약 전 의료법인으로 등록해야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2)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 사립 박물관 · 미술관의 설립 ·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문화 · 예술 · 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립 박물관 · 미술관의 장려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지원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충주시 사립 박물관 · 미술관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 16조)
-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이 2013. 3. 2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 각 부의 명칭과 장관명을 인용한 조례 9개를 한꺼번에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 각 부의 명칭과 장관명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교육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안전행정부장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림축산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4)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규정하고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위원장(판사), 위원 수(11명 이내), 임기(2년)
- 다. 위원의 제척·기피·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회의와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바.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노인전문병원은 노인 및 치매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해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으로부터 병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2005년 3월에 신축하였으며,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에서 2005년 3월14일

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을 하였으며, 2010년 3월 14일부터 5년간 재위탁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음.

- 수탁자의 자격 조건에 있어 현행 조례에는 노인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고 충주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 운영 중인 노인전문병원은 대지확보가 불필요한 상황으로 기존 수탁자의 운영에 어려움을 있을 경우 새로운 수탁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 기존 기부채납자인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에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합리한 조항이라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기부채납자인 의료법인 혜광의료 재단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니 이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수탁자에 대한 자격요건 중 충청북도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선택의 폭을 넓혀 우수한 수탁자 모집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되어 바람직하며,
- 의료법인과 종합병원의 요건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하고 개인 전문의사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과 계약체결 전 의료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2)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문화·

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충청북도에 등록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박물관·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일부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진흥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우리시의 경우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세계술문화박물관리キュ리엄, 성마루미술관 등 총 2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서 현재 세계술문화박물관리キュ리엄만이 등록되어 있으며,
- 아산시, 전주시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박물과 미술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과 향후 뜻있는 문화예술인이 중원문화의 본고장에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13년 3월 2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 중 정부조직법의 행정 각 부 또는 장관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 명칭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도 생략되고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 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도면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 답변 요지

(1)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노인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대지 확보와 시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자로 조항을 만든 취지는?

○ 답변: 기부채납은 당초에 설립할 때 노인병원 설치에 관한 지침이 있었음.

▶ 질의: 타 자치단체의 경우 이익금 발생 시 환수를 하는지 아니면 재투자를 하는지?

○ 답변: 거의 다 조례는 대동소이하나 재투자 쪽으로 가고 있음.

(2)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질의: 없음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질의: 없음.

(4)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질의: 없음.

5. 심사결과

(1)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이익금 발생시 시에 일정비율 납부하도록 한 규정(안 제11조제3항)삭제

(2)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4)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정안	수정안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②(생략) <u>③ 시장은 매 회계 연도 결산 후 이익금이 발생하면 사업비중 시비부담 비율에 따른 이익금을 수탁자로 하여금 시에 내도록 할 수 있다.</u> ④(생략)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②(개정안과 같음) <u><삭제></u> ④(개정안과 같음)